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국정홍보업무운영규정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문화체육관광부장관
제출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K-컬처 확산 등 해외홍보 적기를 맞아 국가이미지 제고에 관한 국외홍보 업무 전략 수립 및 통합 홍보 추진을 위한 부처 협의체 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국외홍보전략회의 운영 근거 마련(안 제11조 제1항 신설)

「디지털 대전환 시대, 해외홍보 추진 계획(2024~2027)」(국무회의 보고, 24.05.28.) 후속, 국외 홍보업무 기본방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상호 협조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외 홍보업무 지원·조정을 위한 국외홍보전략회의 운영 신설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련부서 및 부처 협의 완료

라. 기 타 : 1) 입법예고 전

2) 행정규제 : 규제심사비대상

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

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이미지 제고에 관한 국외 홍보업무의 기본 방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상호 협조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외홍보전략회의를 운영하며, 국외홍보전략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1조(국외홍보업무의 수행 등) <u><신 설></u>	제11조(국외홍보업무의 수행 등) ① <u>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 이미지 제고에 관한 국외 홍보 업무의 기본 방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상호 협조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외홍보전략회의를 운영하며, 국외홍보전략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.</u>
① ~ ④ (생략)	② ~ ⑤ (현행 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(해외홍보기획과)	
연 락 처	(044) 203 - 2917 (3362)